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및 전파 요청

1. 관련 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4.)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961(2020.9.4.)

2.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9.4.(금)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0.(일), 24: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9.13.(일) 24:00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붙임2(2단계 조치 비교표)' 내용 참조

3.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일), 24:00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9.7.(월), 00:00 ~ 9.13.(일), 24:00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나. 음식점, 교습소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9.7.(월), 00:00 ~ 9.13.(일), 24:00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각 기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관련 사항을,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에 신속히 전파해 주시고, 해당 방역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중수본 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비교표 1부
3.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부
4.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5.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대한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장,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사단법인 KBL, 사단법인야구위원회총재,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장,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장, 한국골프연습장협회장, 한국스키장경영협회장,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장, 대한당구협회장

주무관 대결 2020.9.5.
신현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858 (2020. 9. 5.) 접수

우 03119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정책과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3113 팩스번호 044-203-3489 / him1230@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